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검토 보고**

1. 기획예산과-12613(2015.10.19)호와 관련입니다.
2.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(2015.10.15.)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조례안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

나. 제안이유 :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,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·감독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기본원칙에서 “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”을 삭제 함 (안 제3조)
- 2)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4조의 2)
- 3)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」를 준용 하도록 함 (안 제11조)

라. 재의요구 여부 : 재의요구 없음

붙임 1. 검토의견서 1부.

2.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. 끝.

